

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529

제출년월일 : 1999년 6월 일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주차장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의무등이 설치후 통보도록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에 관한 사항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제3조제1항중 일반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관련 사항을 삭제 함
- 민영주차장의 설치가 자유로워 짐에 따라 제7조제2항을 삭제함
-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이 설치 후 통보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 함 (안 제12조)
- 제13조(노외주차장관리규정 신고)를 삭제 함
-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과 관련한 제18조를 삭제하고
- 제18조의2 제목 “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”을 “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”으로 하여 제18조로 함

3. 근거법령

-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제2항, 제6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13조제3항 제21조의2제6항, 제10조제1항제3호, 제19조의3제2항, 제24조의2
-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
-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, 제6조의2

- 붙임 1.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2. 신구조문대비표
3. 기타참고자료

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①법 제7초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을 “노외주차장설치 및 설비기준등”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법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및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며,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 본문중 “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”을 “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호의 단서중 “소수점이하의 끝수는”을 “소수점이하의 수가 0.5이상인 경우에는 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하고 “제18조의2”를 다음과 같이 하여 “제18조”로 한다.

제18조(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)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[별지 제7호서식]을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 통보한 것으로 본다.
- ③(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, 인가, 신고증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</u>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,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(이하 "민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(생략)</p> <p><u>제7조(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)</u> ①(생략) ②민영주차장은 시장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시 주차장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은 시장이 보조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<u>제12조(노외주차장 설치 및 기준)</u>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및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며, 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 시설을 포함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<u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</u>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(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)</u> ①(현행과 같음) ②(삭제)</p> <p>②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<u>제12조(노외주차장 설치 및 설비기준등)</u>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법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및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며, 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노외주차장관리규정 신고) 시장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을 제출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삭 제) 제13조(삭 제)</p>
<p>제14조(주차장설치 심의등)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	<p>제14조(주차장설치 심의등)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
<p>제15조(부설주차장 설치) 영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시설물과 단독주택(단독주택, 다가구용단독주택, 다중주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15조(부설주차장 설치)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단독주택은 3가구당 1대, 공동주택은 세대당1대로 산정한 대수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대수중 많은 대수를 설치한다(단, 가구당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).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p>(--, ----- 소수점이하의 수가 0.5 이상인 경우에는 --)</p>
<p>제18조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) ①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,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 : 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과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설치된 주차장과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	<p>제18조 (삭 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규모 :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의 이용이 지장이 있는 범위내로 한다.</p> <p>3.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시간,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<u>(2)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</p> <p>(3)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.</p> <p>(4)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항은 노의 주차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<u>제18조의2(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)</u> (1) 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<u>(2)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·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·고시한다.</u></p>	<p>제18조(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)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

현 행

[별지 제7호식]

(앞 면)

(제18조 제3항 관련)

부산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		처리기간 7일
신고인	(1) 성명	(2) 주민등록번호
	(3) 주소	(4) 전화번호
시설물	(5) 위치	(6) 용도
	(7) 규모	
주차장	(8) 총 규모	대(m ²)
	(9) 유희 주차규모	대(m ²)
	(10) 유통 주차규모	대(m ²)
	(11) 일반이용에 허규모	대(m ²)
	(12) 이용 금액	원
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		
년 월 일		
신고인 (인)		귀하
첨부서류		수수료
1. 건축물대장		수수료
2. 일반이용에 제공될 부설주차장 평면도		없음
3. 토지조서 및 토지등기부등본		

(뒷 면)

* 기재사항

-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.
- ②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.
-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.
- ④란은 이미 설치된 충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될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.
- ⑤란은 일반이용에 제공될 주차장의 1면당 이용요금을 기재한다.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고인	처리기관	협의기관
	서	판재부서
신고서작성	점수 점토 점재 신고필증 작성	

* 신고번호

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제천시장인

개정안

(삽지)

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성실히 管理·運營하여야 한다.

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. 다만, 路上駐車場管理者가 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改正 95.12.29>

(本條新設 83.12.31)

第11條 (路上駐車場의 標識) ① 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駐車場標識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.

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 이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을 設置하여야 한다.

第4章 路外駐車場

第12條 (路外駐車場의 設置) ① 路外駐車場은 特別市長·廣城市長·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하여야 한다. <改正 95.12.29> <削除 PP.2.8>

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市長·廣城市長·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의 者가 路外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路外駐車場의 構造量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改正 90.12.27, 91.12.14, 95.12.29> <削除 PP.2.8>

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는 때에는 당해 路外駐車場設置에 대한 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제출된 計劃書가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의 駐車場設置에 관한 基本方向 및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의 構造·設備基準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計劃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改正 91.12.14, 95.12.29> <削除 PP.2.8>

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設置를 완료한 者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이 경우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告를 받은 일부터 7일이내에 簿記해 駐車場이 그 設置計劃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. <改正 91.12.14> <削除 PP.2.8>

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畢證을 받기 전에는 一般의 利用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<削除 PP.2.8>

⑥ 特別市長·廣城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.

(후 70)

第14條 (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)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(이하 “路外駐車場管理者”라 한다)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.

②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·廣域市長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 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<改正 83·12·31, 95·12·29> <改正 99. 2. 8>

第15條 (管理方法) ④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·廣域市長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管理·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<改正 83·12·31, 91·12·14, 95·12·29> <改正 99. 2. 8>

②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을 一般의 用에 提供하지 전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과 駐車場의 管理·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管理規程으로 정하여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改正 90·4·7, 90·12·27, 91·12·14, 95·12·29>

③ 刪除 <90·4·7>

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管理規程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<新設 83·12·31, 90·4·7, 91·12·14> <削除 99. 2. 8>

⑤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또는 申告된 管理規程이 다른 類似한 路外駐車場의 管理規程과 한자하 雖然을 염두에 두거나 카타改善을 요하는 不合理한 事項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管理規程의 變更 등 필요한 措置를 采할 수 있다. <新設 83·12·31, 90·4·7, 91·12·14>

第16條 (中止 등의 申告) 特別市長·廣域市長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의 路外駐車場管理者가 駐車場의 全部 또는 部에 대한 供用을 中止하거나 究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<改正 91·12·14, 95·12·29> <削除 99. 2. 8>

第17條 (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 등) 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 또는 管理規程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·運營하여야 하며,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. <改正 99. 2. 8>

②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정당한 事由 없이 그 이용을 拒絕할 수 없다. <改正 99. 2. 8>

③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.

第18條 (路外駐車場의 標識) 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標識을 設置하여야 한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·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

(全文改正 90·4·7)

第19條의2 (附設駐車場의 追加設置) = ①特別市長·廣域市長·市長 또는 郡守는 觀覽集會施設·販賣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施設物로 인하여 駐車需要가 한자하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로 하여금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에 따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것을 허 할 수 있다. <改正 95·12·29>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따로 設置하지 할 附設駐車場의 設置場所·設置基準·카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(全文改正 90·4·7) <削除 99·2·8>

第19條의3 (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) ①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. <하는 者는 市長·郡守 또는 區廳>

②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에 대하여 이를準用한다. <改正 99·2·8>

③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附設駐車場과 당해 施設物의 종류 및 規模·般의 利用時間·기타 필요한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와 條例로 정한다.

④第12條第5項·第13條·第18條의 規定은 第1項의 附設駐車場에 관하여 를 準用한다. <改正 91·12·14, 95·12·29>

(全文改正 90·4·7)

第19條의4 (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 등) ①附設駐車場은 駐車場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 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改正 95·12·29>

③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. <改正 95·12·29>

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物을 建築法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建築物로 보아 同法 同條第2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한다. <新增 95·12·29>

(全文改正 90·4·7)

(주 70)